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1. 12 선고 2020가합102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전용희, 유혜정

피고1. B

2. C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조남식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변론 종결2022. 11. 3.

판결 선고2023. 1. 12.

주 문

1. 피고 B은,

가. 피고 D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3/15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2.

12. 10. 접수 제938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H, I, J, K, L에게 위 가항 기재 토지 중 각 2/15 지분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M에게 위 가항 기재 토지 중 6/135 지분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라. 피고 N, O, P에게 위 가항 기재 토지 중 각 4/135 지분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에게, 피고 D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3/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H, I, J, K, L은 위
토지 중 각 2/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M은 위 토지 중 6/1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N, O, P은 위 토지
중 각 4/135 지분에 관하여 각 2002. 12.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별지1 목록 제2항, 제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E에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5. 4. 14. 접수 제326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E은 원고에게 2005. 4.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별지1 목록 기재 제4항, 제5항, 제7항, 제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F에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 3. 26. 접수 제244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F은 원고에게 2012. 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6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 12. 27.
접수 제113683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6. 별지2 기재 선박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G에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 8. 3. 접수 제1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G는 원고에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3. 4. 28. 접수 제1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7.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3 목록 제1항 기재 각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Q조합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8.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3 목록 제2항 기재 각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Q조합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9.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가. R이 2020. 2.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년 금제152호로 공탁한 공탁금

2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나. S가 2020. 3.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년 금제351호로 공탁한 공탁금

35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10.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T이 2020. 3.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년 금제384호로 공탁한

공탁금 4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1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4 목록 제4항 기재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U(V생)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

나. 별지4 목록 제4항 기재 선박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2. 24. 접수 제20호로

등기한 근저당권에 대하여 위 가항의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2.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5 목록 제1항 기재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W(X생)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

나. 별지5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 8. 9. 접수 제24028호로

등기한 근저당권에 대하여 위 가항의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별지5 목록 제2항 기재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Y(Z생)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

라. 별지5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 12. 29. 접수 제40808호로 등기한 각 근저당권에 대하여 위 다항의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B에 대하여 별지5 목록 제1항 기재 대여금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AA에게, 별지5 목록 제2항 기재 대여금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AB에게 각 채권양도를 통지할 것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주문 제1 내지 5항 기재와 같은 청구취지에 대한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B은 원고에게 845,688,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14, 19 내지 26, 35, 39, 40, 41,

4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망 AD의 차남이고, 피고 B의 아버지 망 AE는 망 AD의 장남으로서, 피고 B이 태어난 해인 1978년에 사망하였다.

나. 피고 B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 AE가 사망하고 그로부터 몇 년 후 어머니도 재가하자, 조부모인 AD 부부에 의하여 양육되다가 원고가 혼인하여 분가할 무렵부터 원고와 함께 생활하였다. 이후 피고 B은 초등학교 6학년 무렵부터 군복무와 대학을 마칠 때까지 대구에 거주하는 숙부 AC(망 AD의 3남으로서 원고의 동생이다)과 함께 생활하였다.

다. 피고 B은 군복무와 대학을 마친 후 포항으로 돌아와 원고의 집에 머물면서 잠시 직장생활을 하다가 2003년경부터 원고를 도와 이 사건 선박의 사무장으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 B은 2007년경 피고 C와 혼인하였고, 원고는 2008년경부터 피고 C의 계좌로 피고 B의 급여를 입금하였는데, 급여액수는 월 230만 원에서부터 점차 증액되어 2010년경 월 280만 원, 2011년경 월 300만 원, 2014년경 월 400만 원이 되었다.

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2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1	포항시 남구 AF 답 1944m ²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2. 12. 10. 접수 제93886호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원인 : 2002. 12. 2. 매매)	매도인 : AG
2	포항시 남구 AH 중 1/2 지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5. 4. 14. 접수 제32674호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원인 : 2005. 4. 14. 매매)	매도인 : 피고 E 공유자 : AI
3	포항시 남구 AJ 전 4669m ² 중 1/2 지분	"	"
4	포항시 남구 AK 대 2735m ² 중 1/2 지분		
5	포항시 남구 AK AM동 중 1/2 지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 3. 26. 접수 제24486호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원인 : 2012. 2. 28. 매매)	매도인 : 피고 F 공유자 : AL
6	포항시 남구 AK AN동 중 1/2 지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 12. 27. 접수 제113683호 소유권보존등기	공유자 : AL
7	포항시 남구 AO 전 565m ² 중 1/2 지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 3. 26. 접수 제24486호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원인 : 2012. 2. 28. 매매)	매도인 : 피고 F 공유자 : AL
8	포항시 남구 AP 전 421m ² 중 1/2 지분	"	

마.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위 표의 순번 1 기재 부동산과 동일한 부동산이다)의 매도인인 AG은 2014년경 사망하여 처인 피고 D가 3/15, 자녀들인 AQ, 피고 H, I, J, K, L이 각 2/15 지분비율로 AG의 재산을 공동상속 하였고, AQ가 2016년경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 M이 6/135, 자녀들인 피고 N, O, P이 각 4/135 지분비율로 망 AQ의 재산을 공동상속 하였다.

바. 원고는 2000. 7. 21. 별지2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위 선박에 관하여 2003. 4. 28. 원고의 처인 피고 G 앞으로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0. 8. 3.에는 원고와 피고 G 사이의 자녀인 AR과 피고 B 앞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0. 8.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피고 B, C의 명의로 Q조합에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이 다수의 예금채권이 있고, 이 사건 선박과 선단을 이루어 공동조업을 하는 선박의 선주들에 대하여 별지4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B, C 명의로 다수의 대여금채권이 있고, 각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별지4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B, C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선박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그리고 피고 B을 채권자로 하여, 채무자 W은 2017. 8. 8. 차용금 4억 원으로 된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AS 소유의 부동산에 별지5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AA은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채무자 Y은 2017. 12. 29. 차용금 2억 5,000만 원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AB 소유의 부동산에 별지5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아. 한편, 원고는 별지 기재 각 재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피고 B, C과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별지4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선박근저당권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고, 이에 위 가처분으로 인하여 누가 채권자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채무자 S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년 금제351호로, 채무자 R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년 금제152호로, 채무자 T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년 금제384호로 각 피공탁자를 원고와 피고 B 또는 피고 C으로 하여 채무 전액을 변제공탁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주장 원고는 AG과 피고 E, F으로부터 별지1 목록 제1 내지 5, 7, 8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AL과 함께 별지1 목록 제6항 기재 건물을 신축한 다음, 피고 B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각 부동산들에 관하여 피고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러한 명의신탁약정과 이를 원인으로 한 등기는 모두 무효이다. 그러므로 주위적으로, 별지1 목록 제1 내지 5, 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도인들을 대위하여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별지1 목록 제6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각 구하고, 아울러 위 매도인들에 대하여 별지1 목록 제1 내지 5, 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명의신탁이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취득자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별지2 기재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인데, 2003년경 배우자인 피고 G에게 이를 명의신탁 하였다가 이후 그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다. 원고는 피고 G, B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써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B은 피고 G에게, 피고 G는 원고에게 순차로 이 사건 선박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별지3, 별지4, 별지5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한 주장 별지3, 별지4, 별지5 목록 기재 각 채권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선박을 운영하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형성한 재산으로서, 각 예금계좌 명이나 차용금증서, 근저당권설정등기상 채권자가 피고 B 또는 피고 C으로 되어 있으나, 위 각 채권은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재산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써 위 각 채권들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채무자들이 채권자불확지를 이유로 변제공탁 한 별지4 목록 제1, 2, 3항 기재 대여금채권에 대해서는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 C 또는 피고 B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나머지 채권들에 대해서는 채권양도의 의사표시 및 그에 따른 채권양도 통지절차의 이행을 구하며, 아울러 별지4 목록 제4항 기재 선박, 별지5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에 관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B, C

- 1) 별지2 기재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주장 별지2 기재 이 사건 선박은 원래 조부인 망 AD의 재산이었는데, 망 AD가 생전에 이 사건 선박을 피고 B에게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선박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므로, 위 선박은 피고 B의 소유이고, 위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도 유효한 등기이다.
- 2) 별지1, 별지3, 별지4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채권에 관한 주장 ① 위 재산은 피고 B의 소유인 이 사건 선박을 통해 얻은 수입으로 마련된 재산들이므로, 그 명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피고 B 또는 피고 C의 소유이다. ②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명의신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여 이를 말소할 의무가 없고, 부동산취득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다. 피고 E, F

피고 E, F은 피고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관해서는 알지 못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판단

- 1) 명의신탁 여부 위 증거들과 갑 제8 내지 13, 18, 27, 28, 34, 42, 44, 46, 4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 ① 망 AD(1930년생)은 생전에 선박을 소유하면서 어업에 종사하였는데, 어린 나이부터 배를 타다가 50세 무렵이 되어서는 건강이 나빠져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한 원고(1960년생)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선박을 운영하고 재산을 관리하였다.
- ② 원고는 2000년경 이 사건 선박을 건조하여 조업활동을 하다가 불법적인 어구 사용이나 공동조업 등이 문제되어 조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3년경 처인 피고 G 앞으로 선박의 명의를 이전하였다. 이후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원고의 아들인 AR과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선박의 등기필증과 매매계약서 등은 원고가 보관하고 있다.
- ③ 이 사건 선박 운영을 위한 사무실과 업무용 자동차는 모두 원고 또는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T의 소유이다.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보관하여 왔으며, 이 사건 선박의 운영에 따른 비용을 결제하고 수입을 관리하여 왔다.

④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인 AU과 기관장 AV는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중대한 일을 원고에게 보고하고 원고의 지시를 받았다. 피고 B 역시 이 사건 선박의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이 사건 선박의 어획량이나 운영상황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보고하였고,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은 물론 이전등기 이후에도 원고로부터 월급을 받았다.

⑤ 망 AD은 2016. 4. 22. 사망하였는데, 자신의 사후에 자녀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2003년경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자신의 재산을 처와 자녀들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관하여 참석자들 사이에 협의서를 작성하였다(피고 B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위 협의서에는 AD 소유의 포항시 북구 AW 토지 및 그 지상 건물만을 피고 B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망 AD이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못하게 될 무렵 원고가 선박관리 등의 일을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선박은 망 AD이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못하게 되고 원고가 선박관리 등의 일을 시작한지 20년가량이나 지나서 건조된 점으로 미루어 이 사건 선박은 원고가 재산을 출연하여 건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B은 이 사건 선박이 조부의 재산인데, 조부가 생전에 이 사건 선박을 피고 B에게 주기로 하였고, 이러한 조부의 뜻에 따라 피고 B의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망 AD이 2003년경 재산분배에 관하여 가족들과 협의할 당시 이 사건 선박은 원고의 처인 피고 G 명의로 되어 있었음에도, 포항시 북구 AX 소재 부동산 외에 위 선박을 피고 B에게 분배한다는 내용은 협의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선박 등기필증 등 관련서류의 보관 주체, 세금의 납부자, 선박의 운영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선박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이고(원고의 동생이자 피고 B의 숙부인 AC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 원고와 피고 G,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또는 지분 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인정된다.

2) 명의신탁의 해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분이 2020. 3. 26. 피고 G, B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이로써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선박 중 1/2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G에게, 피고 G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판단

1) 명의신탁 여부 갑 제4, 5, 13,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0년경부터 이 사건 선박을 비롯하여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04년경부터는 회사를 운영하기도 하는 등 활발한 경제활동을 한 사실,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원고가 보관하고 있고, 세금도 원고가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과 함께 원고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아버지 AD의 뒤를 이어 선박을 운영하고 재산을 관리한 점, 피고 B은 1978년생으로, 군복무와 대학을 마친 후 2003년경부터 원고를 도와 이 사건 선박의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원고로부터 급여를 받는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자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울러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선박의 수입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인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가 피고 B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인정된다.

2) 별지1 목록 제1 내지 5, 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고, 피고 B은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또는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된다.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18호증의 1, 2, 4,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AY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부동산 매매계약은 피고 B이 계약서 작성 등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원고가 나서서 체결한 사실, 매매대금도

원고가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각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의 나이나 원고와 피고 B의 연령 차이 등을 감안하면 매도인들로서도 계약체결 현장에 있는 사람과 계약서상의 매수인이 서로 다르고, 실질적인 매수인은 원고인데 이전등기명의만 피고 B 앞으로 하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별지1 목록 제1 내지 5, 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지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B은 AG의 상속인인 피고 D, H, I, J, K, L, M, N, O, P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위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피고 E에게 별지1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F에게 별지1 목록 제4, 5, 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게 피고 D, H, I, J, K, L, M, N, O, P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피고 E은 별지1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F은 별지1 목록 제4, 5, 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이와 같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임으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별지1 목록 제6항 기재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4호증의6, 갑 제18호증의4, 제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AL은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별지1 목록 제6항 기재 건물을 신축한 다음, AL과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AL은 원고로부터 위 건물의 관리를 위탁받아 이를 임대하여 얻은 수익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 하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30734 판결 등 참조),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인 피고 B이 위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이상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명의자인 피고 B이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피고 B이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위 건물의 신축자로서 원시취득자인 원고에게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이와 같이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임으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 별지3 목록 기재 각 예금채권에 관한 판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예금출연자가 명의인에게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의 문제와는 별개로 예금출연자와 명의인 사이에 예금출연자가 예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를 하거나 권리를 보유하도록 하는 내부적 법률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 한편,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상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출연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의 양도를 청구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양도통지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6720 판결 등 참조).

별지3 목록 기재 각 예금채권은 이 사건 선박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이 그 주요 재원인 사실, 위 예금채권의 통장과 예금의 관리에 사용되는 피고 B, C의 인장을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과 함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원고인 점, 위 피고들의 연령이나 소득 규모 등을 종합하면 별지3 목록 기재 각 예금채권은 원고가 피고 B, C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써 위 예금채권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3 목록 기재 각 예금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의 채무자인 Q조합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라. 별지4, 별지5 목록 기재 각 대여금채권에 관한 판단

별지4 목록 기재 각 선박근저당권부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선박과 함께 선단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조업하는 어선들의 선주들에 대한 채권으로서, 이 사건 선박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이 그 주요 재원인 사실, 별지4 목록 기재 채무자들 외에 이 사건 선박과 공동조업을 하는 AZ 선주 BA, BB 선주 BC도 채권자를 피고 C으로 하여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BA의 채무는 2억 원, BC의 채무는 2억 5,000만 원이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선주들 소유 선박에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 C은 위 선주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대가 없이 양도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러한 사실들과 함께 피고 B, C의 연령이나 소득 규모 등을 종합하면 별지4 목록 기재 각 대여금채권은 원고가 피고 B, C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별지5 목록 기재 대여금채권이 원고가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써 별지4, 별지5 목록 기재 각 대여금채권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런데 별지4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채무자들이 채권자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와 피고 B 또는 피고 C으로 하여 채무액을 변제공탁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별지4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채무에 관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별지4 목록 제4항 기재 채권, 별지5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피고 B은 원고에게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채무자인 U, W, Y에게 위 각 채권양도를 통지하며, 별지4 목록 제4항 기재 선박, 별지5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위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피고 B이 별지5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인 AA에게, 별지5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물상보증인인 AB에게 각 채권양도 통지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등 참조), 이는 물상보증인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인정범위 내의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사경화

판사나소라

판사김다혜

별지